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972

발의연월일: 2021. 8. 10.

발 의 자:이종성·김영식·이종배

김태흠 • 박대수 • 정운천

이채익 · 김형동 · 김태호

서범수 · 조명희 · 박성민

김예지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각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수준 등을 조사 및 평가하여 '교통복지지표'를 산출하여 공개하고 있음.

그러나 교통복지지표가 법정지표가 아님에 따라 지자체 등 교통행정기관들의 교통복지지표 결과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은 낮은 상황임. 또한 각 교통행정기관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교통복지 수준을 개선하고자 하여도 관련 사업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음.

이에 '교통복지지표'를 법정지표로 격상해 교통행정기관의 관심을 높이고 교통복지수준이 취약한 기관은 '교통복지지표'를 근거로 관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).

법률 제 호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5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국민의 교통복지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(이하 "교통복지지표"라 한다)를 개발·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라 교통복지지표가 공표된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 복지지표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 시할 수 있다.
- ⑦ 교통복지지표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실태조사) ① ~ ④ (생	제25조(실태조사) ① ~ ④ (현행
략)	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
	제2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
	이용하여 국민의 교통복지의
	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
	위한 지표(이하"교통복지지표"
	라 한다)를 개발·작성하여 그
	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⑥ 제5항에 따라 교통복지지표
	가 공표된 경우 교통행정기관
	은 교통복지지표의 결과를 활
	용하여 교통복지수준 향상을
	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<u> <신 설></u>	⑦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항목
	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
	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